

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

1. 인천도시계획(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)으로 결정 및 고시【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-118호 (1998.6.12.)】되고 사업시행인가【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-172호(2006.2.24.)】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우리 본부 토목부 지역개발팀(☎032-440-5318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,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며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.

2018년 4월 30일

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

1. 사업명 :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2.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·왕길동 일원
3. 시행자 : 인천광역시(종합건설본부장)
4. 시행기간 : 2006. 2. 24. ~ 2018. 9. 30.
5. 환지처분면적 : 668,414.3㎡
6. 환지처분내용
 - 각 필지별 새로운 지번, 지목, 면적, 지적도면 확정 및 청산금 결정 등
7. 기타사항
 - 본 환지처분 공고로 인하여 종전 토지 공부상의 지번·지목·지적은 환지처분 내용으로 변경되며, 변경된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의 공부 발급은 일정기일이 소요됩니다.
 -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은 우리 본부에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정리할 것이나, 청산금 징수대상 토지는 청산금 납부 완료 후 정리됩니다.
 -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 토지에 결정된 청산금은 별도로 통지하며, 교부금은 본인 청구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및 시행조례 제17조에 의거 우리 본부에서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.
8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

